

[별첨 1]

## 확 약 서

경기도지사 귀중



본인은 판교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 D-2-2 필지(이하 “목적용지”)를 경기도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, 경기도 공고 제2011-61호로 공고한 공급지침 2.4.2) ‘용지별 건축물의 용도’상 ‘허용용도’로 명기된 용도로서, 본인이 제출한 “사업계획서”상에 확약한 용도로 “목적용지”를 충실히 사용할 것이며 일체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만약 “목적용지”를 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매매계약(이하 “본 건매매계약”)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“본건매매계약”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, 만약 위와 같이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“본건매매계약”이 해제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일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11. 4. 20.

매수인: (주)멜파스 대표 이봉우 (인)

